

김광훈 노무사 「핵심정리 노동법 7판3쇄」
7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② (2026-01-06)

P.183~186(임금체권보상법)과 P.19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수정 내용은 '7판3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수정 사항으로 '7판1쇄'와 '7판2쇄'의 독자분들 모두 이번 정오표를 반드시 확인해서 수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쇄(1쇄, 2쇄, 3쇄 ...)는 본문 마지막 페이지인 판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P.85 내용 수정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이번연도임금 휴가) + 제65조 사용금지, 제72조 쟁내근로금지, 제76조의3 제6항 괴롭힘 피해자 불이익 조치
---------------------------	---

〈수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이번연도임금 휴가 <ins>정산</ins>) + 제65조 사용금지, 제72조 쟁내근로금지, 제76조의3 제6항 괴롭힘 피해자 불이익 조치
---------------------------	---

P.86 내용 수정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6조 균등한 처우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21조 전차금상계의 금지
	제22조 강제저금의 금지
	제47조 도급근로자
	제53조 제4항 응급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제67조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제70조 연소, 여성근로자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제73조 생리휴가
	제76조 제6항 임산부 직무 복귀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위반
	제95조 감급의 제재
	제100조 기숙사 설치, 운영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

〈수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6조 균등한 처우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21조 전차금상계의 금지
	제22조 제2항 강제저금의 금지(저축위탁관리시 준수사항 위반)
	제47조 도급근로자
	제53조 제4항 응급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제67조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제70조 연소, 여성근로자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제73조 생리휴가
제76조 제6항 임산부 직무 복귀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위반
제95조 감급의 제재
제100조 기숙사 설치, 운영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

P.132 내용 수정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살쾡이파업
	제38조 제1항 피케팅
	제42조 제1항 직장점거
	제42조의2 제2항 필수유지업무 정지·폐지·방해
	부당노동행위의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수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살쾡이파업
	제38조 제1항 피케팅
	제42조 제1항 직장점거 금지시설에의 직장점거
	제42조의2 제2항 필수유지업무 정지·폐지·방해
	부당노동행위의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P.183 내용 추가

〈기존〉

퇴직자에 대한 대지급금	대상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지급 사유	<p>① 도산대지급금</p> <p>가. 파산선고의 결정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p> <p>[도산등사실인정 요건]</p> <p>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복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나.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다. 사업주(상시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4.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	---

<수정>

퇴직자에 대한 대지급금	대상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함
	지급 사유	<p>① 도산대지급금</p> <p>가. 파산선고의 결정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p> <p>[도산등사실인정 요건]</p> <p>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복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나.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4.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p>

P.185 내용 추가

<기존>

체불임금 등의 확인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1.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음

<수정>

체불임금 등의 확인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1.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음

P.186 내용 추가·삭제 및 오탈자 수정

<기존>

체불임금 등의 생계비 응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 신청 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응자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신청 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응자할 수 있음
	응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제산목록 제출명령	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장관에게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
	임금(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수정>

체불임금 등의 생계비 응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직장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 신청 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응자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신청 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응자할 수 있음
	응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재산목록 제출명령	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직장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에게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장관에게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청구권의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직장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신재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함.
	임금(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삭제>